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명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63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.

발 의 자 : 강명구 · 서지영 · 김용태
김미애 · 구자근 · 성일중
조은희 · 김재섭 · 엄태영
서천호 · 임종득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·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농어촌 면지역 등 상수도 미공급 취약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비용 부담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따라 시·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가뭄 피해 우려 등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·증설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 설치비용 등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1조제2항 신설).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따라 시·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·증설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